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25
----------	-------

발의연월일 : 2025. 10. 27.

발 의 자 : 안도결 · 정준호 · 박홍배
이재관 · 양부남 · 민형배
손명수 · 최기상 · 정일영
정진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일정 기간 이상 피상속인과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동거한 경우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공제는 공제 대상이 되는 상속인을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고,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제 한도액을 6억원으로 하고 있어 그간의 주택 가격 상승 및 생존 배우자의 주거 안정 필요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을 배우자로 확대하고, 공제 요건이 되는 동거 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며, 공제 한도액을 8억원으로 상향하여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

항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를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3조의2에 따른 배우자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한도금액} = (A - B + C) \times D - 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제1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나. 30억원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6억원”을 “8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직계비속)”을 “(배우자, 직계비속)”으로, “10년”을 “8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10년”을 “8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상속공제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u>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u>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2. <u>30억원</u>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 ----- -----금액을 <u>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u>----- -----. 1. <u>제23조의2에 따른 배우자의 동거주택 상속공제액</u> 2. <u>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u> <u>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u>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u>10년</u>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u>10년</u>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생략) ②·③ (생략)	<u>직계비속</u>----- ----- ----- ----- -----<u>8년</u>----- ----- ----- ----- 2. ----- -----<u>8년</u>----- ----- ----- ----- ----- -----. -----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